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3. 12. 15
[규칙 제19호]

개정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일부개정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9. 12. 26>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했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12. 26>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가. 사무실의 조명·청결·안전
 - 나. 휴게실·탈의실·흡연실 설치
 - 다. 사무자동화사무실 설치 등
2.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 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 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 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
 - 라. 성과급과 표창의 공정성 등
3.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
 - 가. 적성에 맞는 보직
 - 나. 직장 내 경조비용 합리화
 - 다. 당직부담의 경감 등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 가. 제안제도의 활성화
 - 나. 직원간담회 정례개최
 - 다. 동호인모임활성화 등

② 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한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3. 법령개정사항
4. 사회일반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사항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회 협의한 사항 등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 별지참조 ”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 장(대리시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연 번	설립						립				미 설립			
	직 장 협 회 명 (소속 기관)	대표자			협 회 위 원 수	설 립 일	회 원				사 유	회 원		
		근 무	직 급	성 명			계 (A)	가 입 금 지 (B)	가 입 대 상 (C)			계 (A)	가 입 금 지 (B)	가 입 대 상 (C)
									가 입	미 가 입				

※ 공무원수 A = B + C